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71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조지연 · 고동진 · 김장겸
성일종 · 추경호 · 김소희
이인선 · 김상훈 · 강명구
신성범 · 김 건 · 박덕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명시된 보상과 지원에 대한 상당 부분이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수당 유족 승계 부재, 건강검진 및 수송시설 지원 근거 미비, 3세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 공백 등으로 인해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적용받는 환자들의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내용을 개정·신설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세환자”를 “2세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⑧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세환자로”를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그”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및 그”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을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 및 고엽제후유

의증환자의 유족(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11 및 제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1(건강검진 지원) ① 국가보훈부 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8(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세환자가”를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세환자가”를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이”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세환자가”를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이”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자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세환자”를 각각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의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u>2세환자</u> 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 ----- ----- <u>2세환자</u> <u>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u> <u>[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u> ----- ----- -----.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 ⑦ (생략) <u><신설></u>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u>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u>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

따라야 한다.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당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당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 2. (생략)

② ~ ⑤ (생략)

<신 설>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고
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
우에 한정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11(건강검진 지원) ① 국
가보훈부 장관은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

<신 설>

자에 대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8(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

제27조(지원의 정지) ① 국가보훈
부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
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은 고엽제후
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
세환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
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제7조의3제1
항에 따라 그가 받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

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
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
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지원의 정지) ① -----

-----2세환자, 고엽
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이-----

-----.

1. ~ 3. (현행과 같음)

② -----
-----2
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이-----

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② ~ ⑥ (생략)

제29조(자료조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를 한다.

② · ③ (생략)

<신설>

-----.
-----.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이-----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자료조사 등) ① -----

-----사람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자녀-----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
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
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 lines are light gray. There are no margins or additional markings present.

1. -----

2세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유족-----

2. 제4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u>2세환자</u>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 11. (생략) ② ~ ④ (생략)	----- 2. ----- ----- <u>2세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u> <u>의 유족</u>----- --- 3.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